[별표4-5]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(안전관련설비)<신설 2015.10.15., 2020.4.8.>

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(안전관련설비)

이 계약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설비의 구매계약으로서, 계약상대자가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5조의 2에 의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

제1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설계,제작,기기검증의 하도급 계약(이하 이 조에서 '하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기 전 한수원 계약사후관리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20. 4. 8 개정)
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, 이와 함께 계약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사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(2020. 4. 8 개정)
제2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특수조건의 위반하여 발주자가 「원자력안전법」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부과받은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